

서울특별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인호 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 번호	1274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2월 5일

발 의 자 : 김인호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김춘례, 경만선, 문병훈,
안광석, 오한아, 노승재,
박기재, 최영주, 황규복,
김기덕 의원(10명)

1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」의 목적규정을 조례 제정 취지 등과 조화되도록 하고, 「국어기본법」에 따른 장애 학생의 불편 없는 국어 사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수립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조례의 목적 중 “올바른 국가관의 확립”을 “국어발전”으로 변경하고자 함.(안 제1조)
- 나. 교육감은 정신상·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고 신설함.(안 제3조제3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국어기본법」

「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

「경기도교육학에 관한 표창 지원 조례」

「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」

「경상남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」

「부산광역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」

「서울특별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2호 별첨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첨부

서울특별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올바른 국가관의 확립”을 “국어발전”으로 한다.

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교육감은 정신상·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및 학생 들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함 으로써 학생들의 건전한 인격형 성과 <u>올바른 국가관의 확립에 이</u> <u>바지함</u>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3조(책무) ① · ② (생 략) <u><신 설></u>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<u>국어발전에</u>----- -----.</p> <p>제3조(책무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교육감은 정신상 · 신체상의</u> <u>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</u> <u>고 있는 학생이 불편 없이 국어를</u> <u>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</u> <u>수립 · 시행하여야 한다.</u></p>

서울특별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안 제3조(책무)제3항에 따른 소요비용 발생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가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(제3조제1항제2호)

- 조례안 제3조(책무)제3항에서 정신상·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, 이와 관련한 현황이 없고 국어교육 사업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비용추계 곤란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 당 관 남승우

사업평가팀장 이정수

분 석 관 원동아

☎ 02-2180-7953

e-mail : dongya1@seoul.go.kr